

「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가.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명칭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중복된 주민등록의 사무위임 규정을 정비하여 일원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 삭제(안 별표 1)

- 1) 6급 이하 일반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보직부여 및 소내 전보권
- 2) 청내 방호 및 제복무 관리, 일일명령, 문서의 접수 및 발송
- 3)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자진신고 납부 및 직권감면 업무, 수입증지 환매
- 4) 물품의 취득, 보관, 사용처분에 관한 업무
- 5) 입산통제구역의 지정, 입산신고 해제권, 산불예방 및 진화단속, 산림 기본 통제, 입목의 등록에 관한 사항
- 6) 농촌생활환경 정비 업무
- 7) 농업법인 육성 및 지도, 농지이용증진,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,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

나. 주민등록 사무위임 규정 정비 및 일원화(안 별표 2)

1)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사무명 및 근거법령 수정

가) 수정내용 :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(단, 주민등록증
신청, 접수, 교부, 수수료 징수는 읍·면·동장도 가능)

나) 근거법령 : 「주민등록법」 제2조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출장소 폐지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, 주민등록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 및 일원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조직개편에 따라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인사·복무·세무·산림·농업 등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, 주민등록 사무의 위임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행정체계의 일관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출장소 폐지에 따라 기존 출장소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본청 및 관련 기관으로 이관되는 만큼, 업무 이관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의 인계 및 처리 체계를 면밀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.